

제42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장관 및 교육감 표창 계획

I 개 요

□ 근거

- 정부포상업무지침(2021.6.17.)
- 교육부 교원정책과-1564(2023.3.8.)

□ 목적

-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 발전에 공헌한 우수 교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스승 존경 풍토 조성 및 교원 사기진작 도모

□ 기본 방침

-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교육혁신 공로자 사기진작으로 국정과제 추진 여건 제고
 -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교육혁신에 앞장서 교육 현장의 변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를 포상하여 교육 분야 국정과제의 현장 확대 유도
- 연공서열식 추천을 지양하고 실제 공적이 있는 자를 추천
 - 추천기관은 재직기간에 따른 연공서열식 포상추천을 지양하고 묵묵히 교육 발전에 헌신하여 그 공적이 귀감이 되는 자를 추천
- 엄밀한 공적 심사를 통해 포상의 영예성 제고
 - 학생, 학부모, 동료 교원 등의 존경을 받고 스승의 날의 참된 의미에 맞는 자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공적 심사 실시
 - 추천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공적심사 기준을 제정하여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추천
- 공립·사립 동일한 기준 적용
 - 공·사립 유치원·특수학교(학급)·초등·중등 교원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

II 표창 계획

□ 훈격 및 대상인원

- 교육부장관: 643명
- 경기도교육감: 773명 (장관 표창 인원의 120% 배정)

□ 대상

- 유·초·중·고등학교 등에 재직하고 있는 **현직 교원**(사립 및 특수학교(급) 교원 포함)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**교육전문직**
- **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**에 재직하고 있는 **현직 교원**

□ 표창 시기: 2023. 5. 15.

□ 표창 분야

- 표창 분야: 6대 분야 (※평생교육 분야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¹⁾에 한함)

[단위:명]

구분	장관 표창							교육감 표창						
	교과지도	생활지도	진로직업	교육혁신	복지봉사	평생교육	계	교과지도	생활지도	진로직업	교육혁신	복지봉사	평생교육	계
유·초·특	82	82	66	66	33		329	99	99	79	79	40		396
중·고	78	78	62	62	31		311	93	93	75	75	37		373
계	160	160	128	128	64	3	643	192	192	154	154	77	4	773

¹⁾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(7교): 진영초등학교(시흥), 진영중학교(부천), 진영고등학교(부천), 계명고등학교(수원), 안양상업고등학교(안양), 부천실업고등학교(부천), 고양송암고등학교(고양)

Ⅲ 추천 기준 및 제한

□ 추천 기준

- 2023.5.15. 현재 재직 중인 자로서 각 표창 분야의 교육활동에서 뛰어난 공로가 있어 (경기)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교육경력이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
- 교육경력(실근무 경력) 기준
 - 장관 표창: 5년 이상
 - 교육감 표창: 3년 이상

□ 교육경력 산정 방법(기준일: 2023.3.1.)

-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 경력 기간만을 대상으로 함
 -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8조(교육경력의 범위)의한 경력을 의미
(단, 재외 한국학교 근무 교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)
- 기간제교사 경력은 포함, 시간강사 경력은 제외
- 경력조서 엑셀 프로그램[서식기]을 활용하여 확인
 - ※ 제외기간: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각종 휴직기간,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
(호봉 산정을 위한 경력 인정 범위와 다름)

■ 기간제 교원의 장관 및 교육감 표창 추천

- 기간제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한 합산 교육경력이 추천 요건(장관: 5년 이상, 교육감: 3년 이상) 충족 시, 장관 및 교육감 표창 대상에 포함하여 추천 가능
 - ※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학교급(중·고등학교)뿐만 아니라 교원자격증 표사과목과 임용과목이 동일해야 실교육경력으로 인정 가능
- 추천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장관 및 교육감 표창 수여 여부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·결정

□ 추천 제한 기준

- 장관 표창
 - 1) 재포상 금지 기간 내 추천되는 자
 - 장관 표창(일반) 수여자: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재포상 금지

-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자: 5년 이내 다시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재표창 금지
- 2)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
- 3) 각종 언론보도,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- 4)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- 5)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(국무총리 표창 이상)
- 6)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- 7)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
 - 다만, 경징계(감봉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 가능
 - ※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
- 8)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
 - 다만,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한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가능하나,
 - 주요비위(금품·향응 등 수수 및 제공, 횡령·배임, 성폭력, 성매매, 음주운전,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)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, 형벌의 종류 및 횡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(선고유예 포함)
- 9)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·경고 처분받은 자

○ **교육감 표창**

- 1) 공무원으로 재직한 총경력이 3년 미만인 자
- 2) 직위해제 중이거나 휴직 중인 자
- 3)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
- 4)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,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후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
- 5)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처분 후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자
- 6) 최근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일반직공무원은 "가"로, 교육공무원은 "양"으로 평정된 자

■ **주요비위:** 「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)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

<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>

1.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(橫領), 배임(背任)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(流用)한 경우
가.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기금
나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
다.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
라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
마.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
바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
사.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
4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
5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
6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

IV 추천 방법

□ 각급학교

○ 기관 추천

- 교사들의 무기명 투표(추천)을 통해 추천 후보자 명단 작성
- 교사, 교감, 교장이 참여하는 학교별 공적심사위원회(기존 포상위원회, 또는 인사자문위원회 활용 가능)를 구성하고 공적심사기준을 제정
※ 스승의 날 유공의 취지에 따라 연공서열식 추천이 지양하고 최근 1년간 실제 공적이 있는 자를 추천
- 공적심사위원회는 무기명 투표(추천)을 받은 추천 후보자 중에서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포상대상자를 선정·추천
- 공적심사기준, 공적심사위원회(인사자문위원회) 회의록은 학교에 보관하고 요구 시 제출
- ‘지역별 배정(안)’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
-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(특수학급, 국립특수학교 포함)·사립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기한까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추천
-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직접 공문 제출

○ **교육주체 추천**(2023년 신설)

- 학생, 학부모(단체), 학교운영위원회, 동료교원, 지역사회 등에서 소속 교원을 추천
-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주체 추천이 가능함을 홈페이지, 가정통신문, 학교 알리미 등을 통해 적극 홍보 (*표창 요청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)
- 추천서와 함께 홈페이지 공고(5일 이상)
- 교육주체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, 관련 서식을 갖추어 기관추천 시 포함 제출(교육주체 대상 표시제출, 지역별 배정 인원에 포함)

□ **교육지원청**

- 교육지원청에 구성되어있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각급학교(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[특수학급, 국립특수학교]포함)·사립학교 및 교육지원청 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되, 전화면담 등의 방법으로 공적 사항을 확인하여 추천
- 공적심사기준, 공적증빙서류는 심사 후 교육지원청에 보관하고 요구 시 제출
- 장관·교육감 표창에 대한 공적 심사는 별도 운영 가능
- '포상 분야'별 추천 순위 부여하여 추천
-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의 순위와 추천자 명부(엑셀) 순위가 상이하지 않도록 유의
- 장관 및 교육감 표창 추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

□ **본청 및 직속기관**

- 부서 자체 심사 후 추천하되, 파견 등의 이유로 추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함

□ **추천 시 유의사항**

-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적 심사를 거쳐 일선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원을 적극 발굴 및 추천
- 사회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인물이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
-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시 추천하지 않음
- 추천 후에도 사회적 물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통보하고 대상자에 대한 포상추천을 철회하여야 함
- 결격사유(징계기록 등) 조회는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서 일괄 조회 예정으로 별도 요청 공문 불요

분야	주요 공적
1. 교과지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등 교과교육 내실화에 공적이 있는 자 ○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,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등 교수·학습 방법 개선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○ 학습부진아 지도 및 기초학력 향상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○ 학교 교육에 창의·인성교육이 정착되도록 기여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 양성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○ 기타 교과지도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
2. 생활지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예방 등 생활지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○ 부적응 학생 등 위기학생 지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○ 학생 봉사활동 등 인성지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○ 양성평등교육, 경제교육, 안전교육, 정보통신윤리교육, 환경교육 등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○ 기타 생활지도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
3. 진로직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진로·직업교육 지도를 통하여 해당분야에서 학생의 소질·적성 계발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○ 특기·적성 교육활동 지도를 통하여 학생의 특기·적성 소양 함양 및 진로직업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○ 기타 진로직업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
4. 교육혁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수·학습 혁신 선도 및 학교교육 지원체계 구축에 공적이 뛰어난 자 ○ 주요 교육혁신 정책 추진을 통해 학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자 ○ 국정과제의 학교현장 안착을 위해 앞장서 그 공적이 뛰어난 자 ○ 기타 교육혁신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
5. 교육복지 · 봉사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사회 교육기부, 온종일 돌봄교실,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복지 기반 구축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○ 장애학생, 다문화가정, 탈북학생, 저소득자녀 등 사회적 소외계층 교육지원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등 ○ 무의탁노인, 결식아동 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○ 기타 교육복지, 봉사활동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
6. 평생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업을 중단한 성인학습자 대상 학력보완교육 등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자 (※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한함)